

이 자료는 2015년 4월 7일 10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--

#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

---

2015. 4월

기 획 재 정 부

# 순서

## [제1편 2016년도 예산안 편성방향]

- I. 재정운용 여건 ..... 2
- II. 2016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..... 4

## [제2편 201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]

- I. 예산안 편성지침 개요 ..... 28
- II. 세입예산안 요구서 작성지침 ..... 30
- III. 세출예산안 요구서 작성지침 ..... 31
- IV. 각 부처 예산요구안에 대한 협의·보완 ..... 52

# 순서

## [제3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]

- I. 기금운용 여건 ..... 57
- II.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..... 58

## [제4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]

- I. 기금운용계획안 작성개요 ..... 66
- II. 수입계획 작성지침 ..... 68
- III. 지출계획 작성지침 ..... 72
- IV. 협의 및 보완 ..... 87

**제1편**  
**2016년도 예산안 편성방향**

I

재정운용 여건

1

대내외 경제여건

□ (세계경제) 미국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 흐름이 지속 되겠으나,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 등 불확실성도 상존

- EU의 미약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, 미국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선진국은 2%대 성장을 지속할 전망
  - 신흥국 경제도 개선세가 전망되나,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라 성장 속도는 과거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
- 다만,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, 유가하락에 따른 산유국 경제 불안 등은 잠재적 위험요인

세계경제 성장률 전망(% , IMF, '15.1월)

	'13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
세 계	3.3	3.3	3.5	3.7	4.1	4.0
- 선진국	1.3	1.8	2.4	2.4	2.4	2.3
- 신흥국	4.8	4.4	4.3	4.7	5.2	5.2

□ (국내경제)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 및 정책 성과 가시화에 따라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히 개선될 전망

- 세계경제 성장,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, 경제체질개선 노력에 따라 소비·투자 여건 개선 예상
- 다만, 선진국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, 가계부채 등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

- 
- **(세입여건)** 완만한 경기회복세에 따라 세입 여건은 다소 개선되나 일부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
    - 최근 세수실적 부진 흐름, 낮은 물가상승세 등이 안정적 세입 확보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
- 
- **(세출여건)** 인구구조 변화 및 복지제도 성장으로 복지지출이 증가하고, 국정과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투자 소요도 증대
    - 보육인프라 확충, 아동돌봄서비스 지원 등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에 따른 연금, 의료 등 의무지출 소요가 급속히 증가
    - 그간 추진해온 국정과제,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재정 투자도 지속
- 
- **(수지·채무)** 경기회복세 지연 등에 따른 세수부진으로 재정 수지 및 국가채무 관리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
    - 통일 대비, 미래 위기 대응, 국가신인도 유지 등을 위한 재정건전성 강화의 필요성 증대
    - 지출 효율화 등 재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확대

II

2016년도 예산안 편성방향

재정  
운용  
목표

- ◆ 전략적 재정투자로 경제 활성화 및 미래 대비 강화
- ◆ 과감하고 항구적인 재정개혁으로 재정의 책임성 제고

중점  
투자  
방향

창의·혁신의 성과로 성장동력 창출	맞춤형 복지 등 민생안정 뒷받침	미래 여건 변동에 선제 대응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, 산업 융복합 촉진 등 창조경제 확산</li> <li>유망기술 사업화, 성실실패자 지원 등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</li> <li>FTA활용, 기술혁신 R&amp;D 지원 등 中企 경쟁력 강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대·계층별 복지 프로그램 확충, 일용 통한 자립지원</li> <li>일학습병행제 확산, 정규직 전환 활성화 등 청년고용률 제고</li> <li>사전예방·신속구조 체계 확립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령사회 대비 평생 교육 강화 및 여성 고용 확대</li> <li>드레스덴 구상 지원, 남북 철도 연결 등 통일 준비</li> <li>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산업·신기술 창출</li> </ul>

재정  
개혁

3대 전략 10대 과제	
재원 배분의 합리성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</li> <li>성과 기반의 투자 효과 극대화</li> <li>재정사업수 총량 관리</li> <li>민간의 투자와 창의를 활용한 재정 운용</li> </ul>
재정 지출의 비효율 차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원연계 지출원칙 정착</li> <li>재정사업과 조세지출 연계 강화</li> <li>보조금 부적정 수급 근절</li> <li>지방재정 지원체계 정비</li> </ul>
재정 운용의 신뢰성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참여 확대</li> <li>부처별로 재정개혁 추진</li> </ul>

---

**①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**

---

- 일자리 확충 및 기업투자 여건 개선으로 경제활성화 뒷받침
- 창조경제 기반 확대, 벤처·창업 활성화,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업체질 개선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
- 서민·중산층의 실질소득 증대 및 사회안전망 지속 확충
- 사전예방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로 국민안심 생활환경 조성

---

**② 제도개선과 인식전환을 통해 재정 지출의 생산성 제고**

---

- 성과 중심으로 R&D, 문화, 정보화 부문의 지원체계를 개편하고, 방위사업 관리시스템의 객관성·투명성 제고
-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투자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국가, 공공기관 및 민간의 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

---

**③ 국민과 함께하는 과감한 재정개혁 추진**

---

- 재정건전성 회복과 누수 방지를 위한 「3대 재정개혁」으로 재정의 책임성 및 국민 신뢰 확보
- 저출산·고령화, 통일 등 미래 대비를 위한 재정적 여력 확보
-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국정과제 및 4대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뒷받침

---

**① 창의와 혁신의 성과를 토대로 경제살리기 및 성장동력 창출**


---

-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, 시·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, 산업 융·복합 촉진 지원 등을 통한 창조경제 확산
- 유망기술 사업화, 성실실패자 재창업 지원, 우수인력 공급 등 도전적 창업·벤처 생태계 조성
- FTA 활용도 제고, 산학연 협력 및 기술혁신 R&D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
- 농수산업의 6차산업화 등 농어촌의 일자리와 부가가치 증대

---

**② 맞춤형 복지 등 국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투자 지속**


---

- 세대·계층별 복지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소득·일자리·노후 불안감을 해소하고,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강화
- 일·학습병행제 확산, 정규직 전환 등으로 청년 고용률 제고
-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및 신속 구조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산업을 육성
- 온 국민이 쉽게 누리는 생활 속 문화향유 기반 확충

---

**③ 고령사회, 통일 등 미래 여건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**


---

-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비하여 평생교육 및 여성고용 지원 확대
- 드레스덴 통일 구상, 남북 철도 연결 계획 등 통일 시대를 실질적으로 준비
-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·공조를 강화하고, 관련 신기술·신산업 육성 지원

### 3

## 강도 높은 재정개혁 : 3대 전략 10대 과제 추진

### [ 전략1 ] 재정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자원배분의 합리성 제고

◇ 한 번 시작된 사업이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응력 저하

⇒ 사업 목표, 추진 성과 등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 규모 조정

#### 과제1

####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(zero-base)

- 개별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(군)은 예산 삭감·폐지를 의무화
- 모든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'보조사업 운용평가'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
- 삭감·폐지에 따라 조성되는 재원은 국정과제 등에 재투자

#### 과제2

#### 성과를 기반으로 재정투자 효과 극대화

-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와 재정 투입의 연계를 공고히 하여 국민 세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
  - 재정투자의 효과가 낮은 사업(예. 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 이하 등급)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을 폐지
- 다양한 사업평가 제도를 통합 운영하여 부처의 평가부담을 줄이고 평가 결과의 활용도 제고

**과제3****사업 구조개편을 위한 사업수 총량 관리제 도입**

- 보조사업의 경우, 소관 부처별로 사업수(세부사업 기준)를 10% 감축하여 요구
- 보조사업 이외 재정사업은 기존사업을 폐지할 경우에 한해 1:1 대응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(one-out, one-in) 도입
- '16년 예산편성시 600개 유사·중복사업 통폐합을 조기 완료

**과제4****민간의 투자와 창의를 활용한 재정운용**

-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민간의 충분한 자원 여력과 효율성을 활용하는 민자 사업 활성화
  - 민관이 사업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분담하고, 추진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'절차 간소화(fast-track)' 추진
  -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(도로·철도 등)은 재정 지원에 앞서 민자 사업 추진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
- 임대리츠, 민간 대행개발 등 SOC 사업방식을 다각화하고, 민간투자자와 국유재산 공동개발 추진

## [ 전략2 ] 중복·누수 등 지출 비효율을 차단하는 시스템 정착

- ◇ 재정 부담에 대한 고려없이 재정사업·조세지출이 추진되고, 집행상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재정 누수 발생
- ⇒ 지출 - 수입 및 재정사업 - 조세지출의 연계를 강화하고, 재정낭비·부정수급의 고리 차단

### 과제5      재원연계 지출원칙 정착

- 신규사업 추진 또는 기존사업 예산 확대가 필요한 경우, 우선적으로 해당 부처에서 지출 절감 계획을 마련
- 지출증가·세입감소를 수반하는 법률 제·개정 또는 계획 수립시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해 재정당국과 협의후 추진
- 부처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출소요가 감소한 사업은 효과가 항구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·제도 정비

### 과제6      재정사업과 조세지출 연계 강화

- 조세지출과 재정사업간 유사·중복의 경우, 조세지출 심층평가 대상으로 우선 선정
  - 신규 조세지출 규모가 300억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
- 일몰이 도래한 300억 이상의 조세지출은 전문연구기관의 심층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

## 과제7

## 보조금의 부적정 수급 근절

- 보조금 부정·부적정 지출의 원인별 개선방안 추진
  -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,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부정 수급 방지 인프라 확충
  -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, 일몰제 도입 등 보조사업의 선정 심사·평가 강화
  - 민간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·외부회계감사 의무화, 부정 수급시 징벌적 과징금, 사업참여 영구 금지(one-strike out) 도입
-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경우, 관련 예산 삭감·폐지

## 과제8

## 지방재정 지원체계 정비

- 복잡한 교부세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,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복지비 비중을 확대하는 등 배분기준 개선
  - 지자체의 세출 구조조정, 비과세·감면 축소 등 재정건전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
  - 특별교부세는 지자체별로 국가시책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
-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학생수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국가시책과 연계 강화

### [ 전략3 ] 국민 참여로 재정운용의 신뢰성 강화

◇ 재정운용 과정과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 
재정 관련 정보 요구도 증가

⇒ 국민의견 수렴 및 재정정보 공개를 위한 소통 채널 확대

#### 과제9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

- ‘국민과 함께하는 재정혁신타운’을 통해 재정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상시 수렴
  - 선정된 우수 과제는 예산편성 및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
-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‘정책고객 심층인터뷰’ 실시
- 월간 재정동향 발간 등 재정정보를 폭넓게 공개

#### 과제10 부처별 재정개혁 추진 및 민관합동 평가

- 부처별로 자체 ‘재정개혁 추진계획’ 수립
-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재정개혁위원회 등에서 재정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부처에 인센티브 부여
- 자발적으로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할 경우 절감 재원은 해당 부처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 검토

## 1. 보건·복지 분야

### 1. 투자 중점

- 취약계층의 “일을 통한 자립” 지원 강화
  - 소득수준·특성에 따른 ‘맞춤형 급여체계’의 안정적 정착
  -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실업크레딧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(EITC) 운용으로 근로 유인 제고
- 저출산·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생애단계별로 생활안정 지원
  -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을 통해 부모의 양육선택권을 확대하고 육아부담 경감
  -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경감
  - 기초연금, 노인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노인빈곤 완화
- 의료접근성 향상 및 보건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
  -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, 취약지역·분야에 대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
  - 보건의료 R&D 투자,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보건산업을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

### 2. 지출 효율화 방안

- 복지사업 확대가 근로유인을 저해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지 않도록 지원체계 재점검
-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고도화, 복지 전달체계 단순화 등으로 중복·낭비·부정수급 방지

## 2. 일자리(고용) 분야

### 1. 투자 중점

- 중장년에 비해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청년·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 강화
  - 국내 경력형성, 해외취업 역량강화,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 등 청년 고용률 제고에 중점 지원
  -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,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, 일·가정 양립 지원 등 여성 친화적 고용여건 조성
-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해소와 신규 인력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'직접 일자리 → 직업훈련'으로 투자전략 전환
  - 일·학습 병행제도 활성화를 통해 청년의 先취업을 촉진하고, 직무능력 평가제 확대로 능력 중심의 채용·교육 시스템 정착
- 서민·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강화
  - 고용복지<sup>+</sup>센터 확대로 취약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유도
  - 취약계층 사회보험료 지원, 임금채불근로자 보호 등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

### 2. 지출 효율화 방안

- 직접 일자리 사업은 민간일자리를 구축하지 않도록 직업훈련 연계 강화 등 사업 내실화 유도
  - 각 부처에서 수행중인 유사·중복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통폐합
-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재편하여 취업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

### 3. 교육 분야

---

#### 1. 투자 중점

---

- 초중등 및 대학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해 창의·전문 인재 육성
  - 특성화 사업 등 대학지원 사업을 재구조화하여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지원
  - 문·이과 교육과정 통합, 융합형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기초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
-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누구나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 보장
  - 국가장학금 지속 지원, 든든학자금(ICL) 및 일반학자금 대출을 통해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
  - 교육급여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초중등 교육비 부담 완화
- 일-학습 연계 강화 등 평생교육 활성화
  -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 활용으로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고, 고졸재직자·성인학습자 등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

---

#### 2. 지출 효율화 방안

---

-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 등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·책임성 제고
  - 초·중등 학생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재원배분 방식에 반영하고,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예산 확대 유도
- 「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립대학 인건비·시설비 지원기준 재정립

## 4. 문화·체육·관광 분야

---

### 1. 투자 중점

---

- 모든 국민이 쉽게 누릴 수 있는 생활 속 문화향유 기반 확충
  - 주민 밀착형 지역문화 활성화를 유도하고, 생애주기에 기초한 문화 체험·교육 프로그램 확대
-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 구현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체육활동 프로그램 보급 촉진
- 고부가가치 문화 콘텐츠·관광·스포츠 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 활성화 뒷받침
  - 콘텐츠 창작·창업 여건을 개선하고, 빅 킬러 콘텐츠(big killer contents) 발굴
  - 의료·MICE 등 융·복합형 관광산업을 지원하여 신규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,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R&D 확대

---

### 2. 지출 효율화 방안

---

- 지나치게 세분화된 사업체계 개편, 유사·중복사업 통·폐합,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문화분야 보조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
- 지방 문화시설(종교, 문화, 체육, 관광 등 관련시설)에 대한 국고 지원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

## 5. 환경 분야

---

### 1. 투자 중점

---

-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 확대
  -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대한 지원 확대
  - 생물자원 보전과 이용을 위한 친환경 연구개발(R&D) 지원
- 환경 SOC사업은 취약지역 및 개·보수 시급지역에 중점 투자
  -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우선 투자
  - 썩크홀·지반침하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내구 연한이 도래된 노후 하수관 교체 및 보수를 지속 지원
- 폐자원 에너지화 등 폐기물 자원의 재활용 지원을 강화하여 단순 매립·소각 폐기물 축소

---

### 2. 지출 효율화 방안

---

- 상하수도·수질에 편중된 투자를 다원화
  - 그동안 집중투자 되어 선진국 수준으로 보급된 하폐수시설 신설투자에서 개·보수 등 시설 안정성 강화로 전환
  - 단순 수질개선 → 수생태계 회복, 점오염원 → 비점오염원으로 투자의 중점을 전환
- 온실가스 감축효과, 시장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환경자동차 지원방식 및 규모 재설정

## 6. 산업 · 중소기업 · 에너지 분야

---

### 1. 투자 중점

---

-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통한 신시장 개척 지원
  - 찾아가는 FTA서비스와 영세기업 원산지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중국 내수시장 본격 개척을 위한 China Desk 설치 지원
- 노후한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혁신
- 벤처 · 창업관련 인프라 및 사업화 지원 강화로 우수 인력의 창업 촉진 등 벤처 · 창업 생태계 활성화
  - 벤처캐피탈 선진화, M&A 활성화 등을 통해 벤처창업 자금의 선순환 구조화 및 창업실패 부담 경감
- 석유 비축 및 가스 · 전기 사용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 투자와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 지속 지원

---

### 2. 지출 효율화 방안

---

- 「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」의 지원이력 정보, 사업수행기관 성과분석 등을 통해 중복지원 제한 및 사업 효율화 추진
- LED 보급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보조금 지원 축소
-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사전 타당성 검증을 통해 투자효율성 제고

## 7. SOC 분야

---

### 1. 투자 중점

---

- 국가기간망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
  - 혼잡구간 해소, 첨단교통체계(ITS) 구축, 철도수요 확충 등을 지원하여 도로 및 철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
- 노후 교통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, 재해대비 하천정비 등 국민 생활안전 투자를 지속
- 노후 산단 재정비, 산업단지 진입도로, 공업용수도 구축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
-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생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심 재생 및 주요 지역개발계획 추진을 지원
- 항만시설 유지·개선을 통하여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

---

### 2. 지출 효율화 방안

---

- 기존사업은 사업 추진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사업 우선순위, 적정 투자규모 및 시기 등을 재검토
  - 신규사업은 국가기간망 등 필수소요 중심으로 최소화
-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은 부대사업 활성화 등 민간투자 방식을 적극 활용
  - 공공부문은 국가-지자체-공공기관간 재원분담 원칙 합리화
- 도로·철도 등의 과다·고규격 설계를 지양하고, 기존 시설의 활용도·연계성 제고를 통해 과잉투자 방지

## 8. 농림수산 분야

---

### 1. 투자 중점

---

-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 수립
  -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FTA 활용을 극대화하고,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피해분야 차질없이 지원
-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
  - 종자·생명산업 투자 확대, 농업과 첨단과학기술·IT와의 융합 등을 통해 농어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
  - 농수산업의 6차산업화, 창조농업을 이끌어갈 핵심인력 양성, 귀농·귀촌 촉진 등 활기찬 농촌 구현
- 농어가 소득·경영 안정 및 재해예방 투자 확대
  - 친환경·고품질 농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, 유통경로 다양화 등 소득기반을 창출하고, 농지연금 등 사회안전망 확충
  - 홍수, 산불, 구제역 등 대규모 재난재해에 대한 사전예방 투자를 강화하고, 재해보험 품목을 단계적 확대

---

### 2. 지출 효율화 방안

---

- 농업 생산기반시설은 완공소요 중심으로 내실화하고, 농축수산물 비축 지원 등은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재원배분 개선
- 구제역,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기관 및 축산농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축질병 방역지원체계 개편
- 단순농지개발 등 중장기 계속사업 중 사업성과가 낮거나 여건변화로 필요성이 낮아진 사업은 지속여부 원점 재검토

## 9. R&D 분야

### 1. 투자 중점

- ICT 등 첨단기술과 엔지니어링·디자인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의 체질개선
- 미래성장동력 R&D를 집중 육성하고, 후속연구·시제품제작 등을 지원하여 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
-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고, 개별 기술들에서 솔루션을 도출하는 융합연구를 활성화하여 선도형 R&D 구조 정착
- 창의·도전적 연구의 성실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한 연구에서 배울 수 있도록 R&D 전 과정의 기록·공유체계 구축

### 2. 지출 효율화 방안

- 시장 수요를 반영한 과제 기획을 의무화하고, 과제선정 및 최종평가지 사업화 가능성 평가도 강화
  - 응용·개발 연구과제의 상향식 공모 비중을 확대하고,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민간수탁 과제비중도 확대 유도
- 장기계속 사업을 일몰형으로 개편하고, 평가·환류를 강화하여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구조조정 또는 사업 전면재검토 추진
- 산업부-중기청 등 관련 부처간 역할 재정립으로 중소·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R&D 사업간 유사·중복 해소
- 무분별한 출연기관 분원설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, 출연금 비목 개편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 제고

## 〈 창조경제 〉

### 1. 투자 중점

- 창조경제 기반 강화
  - 창조경제혁신센터(17개 시·도), 창조경제타운(온라인)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확대
  - 소프트웨어(SW) 활용환경 조성을 통해 미래 세대들의 아이디어와 상상력 구현을 촉진
- 창업·벤처 선순환 생태계 조성
  - 초·중·고교부터 창업교육을 강화하여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문화 조성
  - 창업 유망기업에 대한 사업화 자금 지원과 함께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창업 지원도 병행
- 창조경제형 신산업·신시장 창출
  - 시장 잠재력이 높은 신기술 분야에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기술과 시장을 이어주고 민간투자 촉진
  - ICT 신기술의 초기수요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

### 2. 지출 효율화 방안

-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성과 조기 가시화
  - 창조경제 추진방향에 부합하고 성과 창출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 위주로 투자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조기 창출
- 부처간 협업 강화를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
  - 부처별 개별 기획중인 창조경제 신규사업들을 협업과제화하는 등 부처간 시너지 창출 및 중복투자 방지

## 10. 국방 분야

---

### 1. 투자 중점

---

-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전력 강화 지원
  - 북한 핵·미사일에 대응한 Kill Chain, KAMD를 구축하고, 소형무인항공기·사이버테러와 같은 새로운 위협에도 대비
  - 적정 군수지원 및 실전적 과학화 훈련으로 현존전력 극대화
  
-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열린 병영문화 환경 조성
  - 병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,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병영상담 전문성 강화 및 인권·윤리 교육의 질 개선 추진
  
-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최첨단 국방과학기술 확보
  - 핵심 무기체계 기술능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 한편, 해외수출을 통한 경제적 가치도 창출

---

### 2. 지출 효율화 방안

---

- 방위사업관리시스템의 전문성·객관성을 강화하고, 국방 물자 조달에 경쟁 체제를 확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
  - 국방사업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상용제품의 국방 물자 활용 및 경쟁·입찰계약 확대를 통해 값싸고 질 좋은 제품 공급
  
- 국고채무부담행위 축소, 기금 여유자금의 세입 조치 등으로 국방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

## 11. 외교 · 통일 분야

### 1. 투자 중점

-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와 남북간 교류 · 협력 기반 확충
  - 「드레스덴 통일구상」 지원, 남 · 북간 철도복원사업 계획 등 통일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마련
  -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, 이산가족 생사확인, 상봉정례화 등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여 민족화합과 동질성 회복
-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제고 및 중견국 외교 역량강화
  - 협력국의 경제 · 사회발전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개발협력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상생형 ODA 추진
  - 믹타(MIKTA)\* 등 중견국과 협력 강화 및 국격제고를 위한 글로벌 다자외교 등 국제현안 논의에 주도적 참여 지원
  - \* 세계 GDP 순위 12~18위 국가(멕시코, 인도네시아, 한국, 터키, 호주)
  - 「재외국민 안전정보 센터」을 통한 맞춤형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강화

### 2. 지출 효율화 방안

-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의 유사 · 중복사업을 정비
- ODA사업의 기획 · 평가 기능 강화 및 유 · 무상 ODA 관련 기관간 협업 체계 구축 등으로 투자 효율성 제고

## 12. 일반·지방행정 분야

---

### 1. 투자 중점

---

- 지역행복생활권사업, 지역특화프로젝트 등 지역특성과 선호에 기반한 맞춤형 지역발전시책 중점 지원
- 개방·공유 및 소통·협력을 통한 국민 맞춤 서비스 실천을 위해 「정부3.0」 등 적극 추진
  -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 활용 극대화를 통해 新산업을 육성하고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
- 20대 국회의원 선거 등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차질없이 준비

---

### 2. 지출 효율화 방안

---

-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지역개발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인센티브 재원배분 방식 개선
-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재정 지원체계를 개선
  - 고령화 진전에 따라 보통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비 비중 확대
  - 지자체의 세출절감·세입확충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, 특별·광역시와 자치구간 조정교부금 제도 개편 등을 추진
  - 특별교부세는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주요 국가시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, 사전 배분기준·사후 실적 공개 등 교부·운영의 투명성 제고

## 13. 공공질서·안전 분야

### 1. 투자 중점

- 국민생활 밀착형 범죄 근절 등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투자 확대
  - 성폭력,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하고, 112신고시스템 및 기동순찰대 보강 등 범죄 초기대응 능력 제고
-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·긴급생계비·간병비 지원을 강화하고,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활동 지속 지원
- 아동·여성·장애인·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송지원 등 사법서비스 강화
- 불법조업 근절 및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상경비 역량 제고

### 2. 지출 효율화 방안

- 세입·세출외로 운영되고 있는 공탁출연금의 기금화 추진을 통해 자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
-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외국인 정책 및 관련 사업 정비 추진
- 연안 및 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, 생활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 관련 유사사업을 통폐합

## < 안전투자 >

### 1. 투자 중점

-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계기로 '사후복구'보다는 안전점검 등 '사전예방' 투자 및 안전기준 정비에 중점
  - 대규모 재난예방을 위해 주기적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, 우선순위에 따른 안전 취약시설 보수·보강 추진
  - 학교 안전교육 및 재난대응 훈련을 강화하고, 생활속 안전 문화운동 확산으로 전국민의 안전 생활화 지원
  - 안전기준 통합관리체계, 재난대응 표준체계(매뉴얼) 등 시스템 정비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
-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강화 및 현장 재난대응 책임성 강화
  - 재난안전특교세를 재원으로 재해 예방투자를 확대하여 지자체의 필수 안전 인프라를 지원
  - 소방·해양 분야의 신속한 구조·구급체계 확립
- 민간의 안전투자 유도로 안전산업 활성화
  - 안전 관련 R&D 투자를 확대하고, 기업의 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안전설비투자펀드 지원 추진

### 2. 지출 효율화 방안

- 국가-지자체-민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투자효율성 제고
  - 지자체 안전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안전책임성을 강화하고,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자체 안전투자 확대의 마중물로 활용
  - 민자를 활용한 노후 SOC 개보수를 추진하여 재정투자 보완

**제2편**  
**201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**

# I

## 예산안 편성지침 개요

### 1

#### 지침 목적

- 각 중앙관서의 장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등 요구서 작성시 준수해야 하는 각종 절차, 점검 항목,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제시

\* 부처 실무자들이 예산 등 요구서 작성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별 절차, 각종 서식, 작성 요령, 각종 기준·단가 등을 수록한 「사업유형별·비목별 세부지침」은 별도 배포

### 2

#### 적용 대상

- 201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급 중앙관서 및 소속기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적용됨
- 동 지침은 지방자치단체, 국가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·출연·위탁받는 기관에 대하여도 준용됨

### 3

#### 예산요구 절차 및 기한

- 사전 의견수렴
  - 자체 심의기구를 구성·운영하여 기관내 의견 조정 및 각종 이해단체 등의 요구를 조정
  - 전문가, 지역주민, 사업수혜자 등 각계 및 국민의견 적극 수렴
  - 타 부처 소관 사업과 수혜대상·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 신설시 관계부처와 사전협의 또는 의견청취 후 협의된 사항 제출
- \* (예시)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,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예산을 요구

## □ 첨부서류

- 재정지원의 타당성, 산출내역(단가, 수량) 등을 포함하는 소관 예산안 설명자료
- '15~'19년까지의 수입전망과 지출소요  
(각 연도별 국세·세외수입 전망, 주요 사업·항목·연도별 세출소요)
- '16년도 성과계획서, '14년도 성과보고서(국가재정법 제8조)
- 회계·기금간 여유재원의 전입·전출 명세서  
(국가재정법 제13조 및 제34조 제13호)

## □ 예산안 요구서 제출기한

- 각 중앙관서의 장은 6.5일까지 「국가재정법」 및 예산안 편성 지침 등에 따른 첨부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

## Ⅱ

# 세입예산안 요구서 작성지침

### 1

## 국세수입

- 대내외 거시 재정여건 변화를 면밀히 검토후 징수 가능한 국세 수입액을 계상하고, 관련 법령 개정시 법령 개정애 따른 세수 증감 요인을 정확히 추계하여 반영
- 적극적인 국세수입 증대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입 예산안 작성

### 2

## 세외수입

- 당해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수입을 전액 계상
  - 국고금관리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국고로 징수 또는 수납 하여야 할 수입은 누락하거나 축소 계상함이 없이 총수입액의 전부를 세입예산에 편성
-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요구시 제출
  - 유가증권, 부동산 등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
  - 배당수입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배당정책(14.12월)에 따라 공공기관 특성에 맞게 적정한 배당성향 산정기준을 적용
  - 사용료·수수료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단계적 현실화
  - 벌금·변상금·가산금·미수채권 등은 실효성 있는 수납률·회수율 제고 대책을 마련
  - 실질적으로 국가 재정활동에 해당하나 예산체계 밖에서 운영 되던 자금을 발굴하여 예산체계 내 흡수하는 방안 마련

### Ⅲ

## 세출예산안 요구서 작성지침

### 기본방향

- 모든 사업을 원점(zero-base)에서 재검토하여 비효율적 지출 감축
- 사업 구조개편을 위한 사업수 총량 관리제 도입
- 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및 재정사업-조세지출 연계 강화 등 지출 비효율 차단

### 1

### 공통사항

#### [ 신규사업 ]

- 사업추진 필요성 자체 점검
  - 2016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업 설명자료에 첨부
  -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계속비 사업은 중기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
  - 건물신축 등 신규 시설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
- 자원대책 마련 및 사업수 총량 관리
  - 신규사업 요구시 원칙적으로 지출의 증가분만큼 세입증대 방안 또는 기존 사업의 감축 방안을 동시에 제시(Pay-go 적용)
  - 보조사업 이외의 재정사업은 기존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해 신규사업 신설을 허용하여 부처별 사업수를 일정수준에서 관리 (one-out, one-in 적용)

□ 일자리 창출의 양·질을 고려

- 예산규모가 크고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은 고용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검토 후 예산 요구

□ 공용재산 취득사업(기존 청·관사의 신·증축 및 사업용 재산 포함)

- 일반회계 소관 공용재산(국유재산법 제6조의 공용재산 중 부동산과 그 종물)의 취득(매입 및 신·증축 등)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요구
- 「정부청사관리규정」 적용을 받는 청사건축은 「2016년도 청사 수급관리계획」에 사전 반영된 경우에만 예산 요구
- 대민 서비스 향상, 안전성 제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요구
- 청사 신축시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에너지 사용 절감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검토

□ 신규 시설·장비 도입시 인력운용 등과의 연계

- 신규 시설·장비 도입과 관련, 예산 편성시 직접비용 외에 인건비·관리비 등을 포함한 '총비용'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
- 인력충원계획 등을 포함한 '총비용 산출내역'을 제출

**[ 계속사업 ]**

- 모든 재정사업은 우선순위를 철저히 점검하여 구조조정 추진
- 의무지출 사업도 사회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추진
- 총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는 계속사업은 집행률 점검 등을 통해 사업규모, 지속추진여부, 투자시기 재검토
- 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「총사업비 관리지침」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등 총사업비 조정 후 예산 요구

\* 보조금·출연금·출자금 등에서 추진하는 계속사업도 준용

## [ 유사·중복 사업 조정 ]

- 부처간 및 부처내 모든 유사·중복사업을 대상으로 통·폐합을 추진하되, 통폐합에 대한 국민의 체감효과가 큰 부문에 집중
- **(부처간 유사·중복 사업)** 외부기관 지적, 사업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되, 아래 4가지 기준에 따라 적극 발굴
  - 다수부처에서 유사사업을 서로 다른 시기에 추진하기보다는 한 부처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
  - 지원대상과 내용이 유사한 사업
  - 지원대상은 다르나, 지원내용이 유사해 통폐합이 바람직한 사업
  - 지원대상이 같아 상이한 지원내용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

----- <'14년 추진 예시> -----

-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('14년 2,171억원)과 복지부 희망리본사업('14년 277억원)을 사업목적·대상 등이 유사한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통합

- **(부처내 유사·중복 사업)** 부처별로 판단하되, 아래 4가지 기준에 따라 대상 적극 발굴
  - 정책여건 변동, 사업방식 변경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
  - 동일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을 가진 2개 이상 사업이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 등에 분산 추진되고 있는 사업  
→ 여유자금이 있는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이관
  - 별도 세부사업으로 유지할 필요가 낮은 소규모 사업 등

----- <'14년 추진 예시> -----

- ① 회계이관 : 사업목적(해양쓰레기 처리)은 동일하나 광특회계(해양및 수자원관리), 일반회계(해양쓰레기피해복구)로 분리운영 중인 사업 통합
- ② 과목조정 : 발농업직불제, 축산물이력제, 유류피해지역지원, 생활림조성관리, 지역복지사업평가사업 등

- **(정비원칙)** 201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규모가 더 크거나,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·실국으로 통폐합 추진

## □ 신규 사업

- 지방이양 사업 및 보조금법상 지원대상 제외 사업(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의2)은 요구 불가
  - \* 단순히 사업명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
  - 지방교부세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대상 사업은 예산 요구 대상에서 제외
- 당해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해 지방재정 투·융자사업 심사를 받은 사업인 경우, 심사 결과를 예산요구서에 첨부
- 신규 보조사업(100억원 이상)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 및 일몰제 도입으로 보조사업의 선정 심사·평가 강화

## □ 자치단체 보조사업

- 현재 국고로 지원 중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은 지방이양 추진
- 사전 부지확보, 인·허가 절차 이행, 주민동의서 수령 등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지원
  - 사업계획 공고, 사업자 선정 등 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요구(불가피할 경우 세부일정은 예산요구서에 첨부)
-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자율편성사업으로 추진
- 보조금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국고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한 경우, 중앙관서의 장은 전년도 사용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출
- 자치단체의 재원분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지자체 분담분 미확보시 원칙적으로 요구 금지
  - 자치단체 중기 재정계획에의 반영여부, 전년도 지방비 분담 실적 등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

## □ 민간보조사업

- 출연금 예산을 계상한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 예산은 지원 불가(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)
- 다만,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조금 지원 가능

- \* 출연기관 근거법에 규정된 '고유업무' 이외의 사업으로,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보조 사업자로 결정된 경우
- \* 고유업무는 아니나, 업무 유관성 및 전문성 등을 감안, 효율적 사업관리 차원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경우

## □ 보조사업 구조조정

-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자체 구조조정 우선 추진

— < 일몰 대상(예시) > —

- i) 지원 목적이 달성되어 시장기능을 통해 자율적 수행이 가능한 사업
- ii) 그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초 지원효과가 불투명한 사업
- iii) 여건변화 등으로 국고지원 필요성이 감소한 사업
- iv)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
- v)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등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인 사업
- vi) 연례적 집행 부진 등 외부지적(국회, 감사원 등)이 있는 사업

- 소관 국고보조 사업수는 신규 요구사업을 포함하여 '15년 예산 대비 사업수를 10% 감축하여 요구
-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
  - '14년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중 '16년 폐지·단계적 감축·사업방식 변경 대상 사업
  - '15년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중 '16년 폐지·단계적 감축·사업방식 변경 대상 사업

< 보조사업 평가결과 및 활용방안 >

평가결과		활용방안
폐지	① 즉시 폐지	▪ 해당 보조사업의 예산 미반영 검토
	② 단계적 폐지	▪ 계속사업 진행 등으로 즉각적 폐지는 곤란하나, 사업목적 달성 시점을 명시(일몰기한 설정)
	③ 통폐합	▪ 유사사업 및 관련사업과 통합
유지	④ 단계적 감축	▪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, 여건변화 등으로 지원 적정 규모가 감소한 경우 감액
	⑤ 사업방식 변경	▪ 보조금 지원이 아닌, 기관 직접수행 또는 위탁사업 등으로 운영
	⑥ 정상 추진	▪ 적정 소요를 지원하되, 사업성과가 우수한 경우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

○ 세출구조조정 노력 강화

- 지원방식 개선을 통해 사업 효율화 추진

- \* (예시) 현행 직접보조 → 인센티브 지원 또는 정액보조 방식
- \* 보조기관·단체를 통해 국고 100%로 지원하는 연구용역비, 행사비 → 연구용역비는 부처의 직접사업비, 행사비는 위탁사업비로 변경

- 시설보급률 등 자치단체 상황을 고려한 국고보조율 조정, 보조율 차등화 및 특별교부세 활용 방안 강구

- 실 집행부진 및 성과미흡 보조사업은 구조조정 추진

-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·지자체 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 축소·폐지

- 일몰 도래 사업, 자치단체 고유사업,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, 전달기관 운영·유지 성격이 강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 폐지 추진

○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, 지방자치단체별 한도 등을 이유로 타 회계 지원 요구 금지

○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금·운영비 지원은 경영개선 및 자구 노력 우선 추진을 전제로 정부지원 여부·방식 등 결정

### 3

## 성과평가 대상 사업

\* 동 지침은 일반재정사업 외에 정보화사업에도 적용

### [ 기본원칙 ]

- 세출구조조정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의 연계 강화
-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이 없거나 유사·중복사업 등으로 평가받은 사업의 경우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여 예산 편성
- 사업별 평가결과를 제도 개선 등에 적극 활용

### [ 예산연계 기준 ]

#### 재정사업 자율평가

- 평가 등급\*에 따라 예산 요구 및 편성

\*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·점검을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기준

- ‘보통’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증액 불가
  - 성과지표가 부실한 경우는 구체적인 지표개선 계획 등을 감안하여 예산 규모 결정
- ‘미흡’ 및 ‘매우 미흡’ 등급 사업은 수정평가\*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차기평가 도래연도까지 10% 이상 삭감 추진
  - \* 성과지표 개선, 성과목표 달성도 등 성과정보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주기 미도래시에도 수정평가를 통해 등급재조정 가능
  - ‘매우 미흡’ 등급 사업은 예산 삭감과 함께 사업폐지도 검토
  - 다만, 사업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 삭감이 곤란한 경우 제도개선 대책 시행을 전제로 예산규모 조정 가능
- 등급에 관계없이 재정여건에 따라 동결 또는 감액 편성 가능
- 평가결과 3회 연속 ‘미흡’ 이하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 폐지

- 평가결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에 시정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
  -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평가시 감점 및 예산 편성시 감액 가능

---

## 심층 평가

---

-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
  - 재정지원 타당성 부족, 사업성과 미흡 등 지적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폐지 또는 지원규모 축소 등 세출구조조정
  - 유사·중복으로 평가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통·폐합 방안 마련
- 심층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반영하여 예산 요구
  - 후속조치계획 미수립 또는 미이행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 폐지 또는 감액 가능

## [ 성과계획서 작성 ]

- 성과계획서 작성 및 국회 제출
  -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예산요구서와 함께 성과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
- 성과계획서 작성대상
  -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
    - 단,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기금으로 수행하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계획(지표, 목표치 등)을 소관 주무부처에 제출

-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한 성과계획을 포함하여 부처의 성과계획서를 작성
- \*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→ 정부안 확정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 제출
- \*\* 성과계획서 국회 제출시에는 예산요구서 기준이 아닌 확정된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수정

#### □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 등

-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,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방법, 성과계획서 양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(201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)으로 4월중 통보 예정
- 2016회계연도부터는 예산의 프로그램체계와 성과관리 목표체계를 일치화시켜 운영

#### □ 예산안 편성결과 반영

- 정부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예산금액 · 지원조건 등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성과계획서도 수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
  - \* (예시) 예산 증감시 성과계획서의 예산내역 뿐만 아니라 성과지표 목표치 등 연계 · 수정, 사업내용변경(보조율 증감, 지원단가 및 물량 변경 등)시 성과계획서의 관리과제별 사업개요 수정

#### □ 신규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의 적정성 검증

-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신규사업(단위사업 기준)에 대해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 운영
  - 신규사업의 성과지표, 측정방법 및 산식 등을 성과계획서 별첨 자료에 작성하여 제출
  -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규사업의 성과지표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 편성시 활용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「201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」을 참고

## 4

##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

### [ 기본 원칙 ]

-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관련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 요구에 앞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
-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해 예산 반영 가능

### [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요건 ]

- 신규사업으로서,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
  -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\*, 정보화, 국가연구개발 사업
    - \* 토목,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
  - 중기재정지출\*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, 보건, 교육, 노동, 문화·관광, 환경보호, 농림해양수산, 산업·중소기업분야 사업
    - \*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상의 연차별 재정지출의 합
- 다만, 다음과 같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
(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의2,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1조 반드시 참조)
  - 공공청사·교정시설·초중등 교육시설 및 문화재 복원사업
  - 국가안보, 남북교류협력, 국가간 협약·조약에 따른 사업

-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사업, 재난예방·복구, 안전 관련 사업
-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
- 출연·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, 용자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 실익이 없는 사업 등

## [ 세부 지침 ]

-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, 원칙적으로 전전연도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요구
  - 매년 2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작성·제출(예타 운용지침 제15조~제27조 등 참조)
-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판단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 면제 절차에 따라 신청  
(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의2, 예타 운용지침 제11조 참조)
  -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판정결과에 따라 예산 검토
  -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예타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, 총사업비,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(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제13조)
    - \* 주무부처에서 예타면제 요구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거나, 기획재정부장관 직권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 선정 가능
- 국도·국지도 5개년 계획 등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간 상호연계성이 큰 경우,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들에 대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\* 요구 가능(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제10조)
  - \*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가 없을 경우에도, 기획재정부장관 직권으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가능

-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산 요구
  -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는 예타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경우를 전제하여 예산요구 가능
  
- 예상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임에도 총사업비를 과소계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
  
-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세부지침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기본경비 삭감 등 불이익 조치 부과 가능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「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」을 참고

## [ 기본 원칙 ]

-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연차별 소요 예산을 요구
-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, 예산 요구시 「先 총사업비 변경, 後 예산반영」 절차 준수

## [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]

-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
  -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
  -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
  - 500억원 이상 토목 및 정보화사업,  
200억원 이상 건축 및 기반구축 연구개발사업
-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리대상에서 제외
  - 정액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
  - 용자사업
  - 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’에 의한 민간투자사업
  - 도로유지·보수,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·보수 사업

## [ 세부 지침 ]

-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 요구
  - 타당성조사, 기본설계비, 실시설계비, 보상비, 공사비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 반영
  - 설계비, 시설비, 건설사업관리비 등은 각 비목별 세부지침을 적용
    - \* 계속사업의 경우 dBrain 상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예산 요구 및 검토
  
-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총사업비에 따라 연차별 소요액을 예산 요구
  - 총사업비는 기본계획수립, 기본설계, 실시설계 등 각각의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과 변경여부를 협의
  - 총사업비가 종전에 비해 크게 증가되는 경우 예산안에 연차별 적정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조정을 함께 검토
  - 예산소요액은 총사업비에 반영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구
  -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된 예비비(10%)는 예산 편성단계부터 제외하여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
  - 계약이 체결된 계속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등 총사업비 조정 후 예산 요구
  
- 다음 연도에 완공되는 사업은 예산안에 완공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6.5일까지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
  - 총사업비 변경 요구시 향후 추가적인 총사업비 변경이 없도록 잔여공정에 대한 완공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
  - 완공연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변경 불허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「총사업비 관리지침」을 참고

## [ 작성 대상 사업 ]

- 성인지 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
  -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, '15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사업,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
  - '15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사업은 반드시 포함

## [ 세부 지침 ]

- 성인지 예산 작성부처는 (i) 성평등 목표, (ii) 사업 총괄표, (iii) 사업별 설명자료(성평등 기대효과,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등 포함)를 작성
  - (성평등 목표)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부처별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기술
  - (사업 총괄표) 회계, 세부사업, '15년 및 '16년 예산현황 작성
    - \* 성평등 목표 및 사업 총괄표는 해당부처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작성
  - (사업별 설명자료) 작성양식에 따라 해당내용 작성
    - \* 사업별 설명자료는 해당부처 사업 담당부서에서 작성
-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'16년도 예산요구시 일반적인 사업별 설명서와 별도로 성인지예산서를 제출
  - dBrain 입력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을 표기
    -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이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인 경우, 세부사업과 내역사업 모두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으로 표기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「성인지예산서 작성 세부지침」을 참고

## [ 편성 대상 ]

- 국가재정법 제39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\* 중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경우

\*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(건축은 200억원 이상)인 사업(시행령 제14조)

< 계속비 예산안 편성 대상 >

1.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
2. 재해복구를 위해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
3. 공사가 지연될 경우 추가 재정부담이 큰 사업
4. 국민편익, 사업성격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

-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산안을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각 연도별 연부액을 정하여 요구

- 계속비 예산안 편성 한도(법 제3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4조의2 제1호)

- 부문(장관항 중 관) 예산대비 계속비 예산안 한도와 중앙관서의 시설투자 예산\*대비 계속비 예산안 한도는 추후 통보

\* 토지매입비(410목), 건설비(420목)

## [ 편성제외 대상 ]

- 사업성격상 계속비 예산안 편성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

-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제62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
-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
- 낙찰차액 발생 등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될 가능성이 큰 사업

- 지방비 등 국고 외의 재원이 소요되거나 토지 등의 보상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경우
- 타당성재조사 또는 수요예측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조사 요건에 해당되어 재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- 잔여 사업기간이 짧아 계속비 예산 편성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회계연도별 연부액 규모\*가 지나치게 커 다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
\* 이와 관련된 사업유형별 연부액 기준은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

## □ 출연사업

- 출연대상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(국가재정법 제12조),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이관
- 세출구조조정 관련 유의사항
  -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지원소요 연차별 축소
  - 수지차방식으로 출연금(보조금 포함)을 지원받는 기관은 보유 자산의 현금화, 자구노력 등을 통해 자체수입을 최대한 확보
  - \* 법정자본금을 초과하는 이익잉여금 등 활용가능 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수입에 반영
  - 기금 내 여유재원으로 보증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거나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금은 출연 축소·중단

## □ 재정융자사업

- 수요 부진 등으로 연례적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융자사업 규모 축소 또는 폐지
- 취약계층 지원 등 정책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융자사업은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 검토

## □ 특별회계·기금 사업

- 연례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 운영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 사업은 대폭 정비
- 특별회계·기금의 자체세입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
- 공자기금 예탁 확대 등 기금 여유재원의 활용도를 제고

## □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사업

- 「예산성과금 규정」에 따라 '16년 당해 사업예산이 감액된 경우, 감액분을 해당 중앙관서의 '16년 예산 지출한도액 내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에 반영하여 요구 가능

## □ 자치단체 대상 공모사업

-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는 다음의 입지선정 기준을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고, 입지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반영에서 제외

### < 자치단체 대상 국책사업의 입지선정 기준 >

- ① (순수 대형국책사업) 중장기 국가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절차 없이 부처에서 직접 선정\*  
\* 사업기획단계부터 전문가 자문·공청회 등을 개최하고,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 적용·선정과정 공개로 절차적 합리성 확보
- ② (지역참여형 대형국책사업) 기피·혐오시설 입지 등 지역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공모절차를 거치되, 부작용을 최소화
- ③ (지역균형발전사업) 전국적으로 골고루 배분되거나 반복적인 사업의 경우 가급적 자치단체·산업계에 선정 위임  
\* 자치단체 공모사업 추진시,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하고 공모참여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
\* 자치단체 대상으로 신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는 관련 법령 (입지 선정 지침 등)에 위의 입지선정기준을 반영

## □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

-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,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  
\* 예산요구시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결과, 고용친화적 정책제언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

## □ 조세지출예산과 세출예산간 연계

- 세출예산사업 검토시 정책목적과 수혜대상이 유사한 조세지출 존재 여부, 지원규모 등을 파악
  - 세출예산사업 요구시 각 중앙관서 소관의 조세지출예산 리스트를 제출하고, 사업별 설명서에 조세지출 관련 내용을 필수 기재
    - \* 조세지출 건의·평가서에 명시된 관련 예산사업·조세지출 내용, 조세지출 심층평가·예비타당성 조사 결과
- 세출예산과 조세지출간 유사·중복이 있는 경우 폐지 또는 재설계 계획 마련

## □ ODA 대상 사업

- 각 중앙관서의 장은 ODA 대상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, 원칙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\*에 사전 제출
    - \* (양자) 유상: 기재부, 무상: 외교부  
(다자) 국제금융기구: 기재부, 그밖의 기구: 외교부
  -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분야별 연간종합 시행계획안을 심의·조정하고 그 결과를 6.5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송부
  - 다만, 국제기구와의 협의, 외교적 여건 변화, ODA 대상 사업으로의 신규 편성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로 예산 요구 가능
- 기존 운용 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요구시 기존 펀드의 자금 활용 방안(자펀드 청산결과 및 향후 청산계획 등을 포함)을 우선 검토
- 정원이 증가되어 발생하는 기본경비 및 관련 사업비는 증액없이 원칙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

- 재정수반 법률 제·개정은 사전에 재정당국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친 후 추진
    - 지출증가·세입감소를 수반하는 법률 제·개정시에는 상세한 재원조달방안(세출절감 또는 대체재원 발굴)을 반드시 첨부
  
  - 대규모 재정소요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
    - 대상사업 : 연간 500억원 이상 또는 총지출 2,000억원 이상 재정이 소요되는 중장기 계획
    - 협의절차 : 재정관리협의회\* ·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 상정
      - \*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정부내 협의 · 조정기구, 분기별 1회 정례 개최
      - 협의절차 미이행시 원칙적으로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
  
  - 국고지원을 10억원 이상 요청하는 국제행사의 경우 「국제행사 심사위원회」의 사전심사를 거친 행사에 한하여 반영
    - 과도한 재정소요를 유발하거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는 국제행사는 최대한 억제
    - 사후평가 결과 당초 행사목표(성과)를 현저하게 달성하지 못한 경우 향후 유사한 국제행사 신청시 불이익 조치
  
  - **2016년 예산안 요구시 적용할 기준환율**
    - 대미 달러화 : '15.4.10일 종가 환율
    - 여타 통화 : 한국은행(<http://ecos.bok.or.kr>)에서 발표하는 미 달러 대비 특정국 재정환율 적용('15.4.10일 종가)
- ※ 2016년 예산안 최종 적용 환율은 추후 통보 예정

**IV****각 부처 예산요구안에 대한 협의·보완**

---

- 기획재정부장관은 「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주요 협의·보완사항」(참고)에 따라 각 중앙관서 장의 예산요구안에 대해 협의·보완할 계획임
-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,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작성지침 등을 포함하여 2016년도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추가 통보할 수 있음
-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요구안에 대해 협의·보완 요구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
-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협의·보완 요구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중앙관서에 대해 기본 경비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- 의무 지출이 적정수준보다 과소하게 요구되었는지 여부
- 사업 시행주체간 역할 분담이 적정한지 여부
  - 중앙관서간 업무 · 기능에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
  - 자치단체 고유사무 또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 여부
    - \* (예시)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을 국고보조로 다시 요구하는 경우 등
  - 중앙과 지방과의 재원분담이 적정한지 여부
  - 규제완화 등으로 정책목적이 달성가능하거나 정부개입으로 민간의 자율기능이 저해되는 사업인지 여부
- 예산반영을 위한 절차 및 지원기준 준수
  - 단계적 예산반영 원칙을 준수하고,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가 충분한지 여부
    - \* (예시)예비타당성조사, 기본설계 등 단계적 사전절차 이행여부, 재원분담 등에 대한 관계부처간 사전협의, 대규모 재정소요 계획 사전협의 등
  - 계획된 총사업비, 사업기간, 보조율, 사업수행기관 등 사업별 지원기준이 준수되었는지 여부
    - \* (예시)사전협의없이 응자사업을 국고보조나 이차보전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하여 예산 요구
  - 재정당국과 합의한 사항\*을 준수하였는지 여부
    - \* 재정수반법률, 대규모 재정소요 계획, 국제행사 개최 등 협의시 합의한 사업대상·지원조건·사업내용·비용부담주체 등
  - 예산편성과정에서 국민 등 정책 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, 이를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

- 중앙관서간, 유사사업간 지원조건 형평성이 유지되는지 여부
  - 부처간 균형이 필요하거나 재정지출의 투명성·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비목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조정
    - \* (예시)인건비, 국외여비, 업무추진비, 특정업무경비 등

□ 재정개혁 이행 여부

① 사업 원점 재검토, Pay-go 등 세출구조조정 추진

-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(군) 및 재정투자 효과가 낮은 사업의 삭감·폐지 여부
- 의무지출 증액 또는 신규 재량지출 요구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했는지 여부

② 유사·중복 사업 통폐합 등

- 다부처·다기관이 관련된 사업의 경우 부처간 협업을 통해 주된 사업 수행부처로 사업이 통폐합되었는지 여부

③ 재정개혁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수준

-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발생한 절감재원은 해당 중앙관서의 '16년 예산 지출한도액 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반영

□ 재정사업 전달체계 효율화

- 부정수급 사례 등이 적발된 보조금 사업의 경우 재발 방지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였는지 여부
- 정부지원이 필요한 국민·기업이 누락되거나, 관련지원이 중복 수급되고 있는지 여부

## □ 세입확보 및 재원관리 측면

- 조세지출-세출예산간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정책수단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
- 예산·기금간의 사업 이관 및 회계 분류 등에 관계되는 사항
- 조세·수수료 감면 등 세입의 증감에 관계되는 사항
- 공자기금 예탁 등 여유재원의 통합관리에 관계되는 사항
-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방안 제시 여부
  - \* (예시)대규모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의 대폭 증액시 다른 사업의 구조 조정 계획, 추가 세입확보 방안 등 재원확보 방안 제시

## □ 기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

- 적정예산 편성을 통한 예비비 사용 및 이·전용 최소화
  - \* (예시) 반복적인 예비비 사용항목은 본예산에 적정소요 반영, 연례적인 이·전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편성
- 바우처 제도 도입 등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수행 방식의 전환 여부 등

# 제3편

##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

◇ 「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」상 별도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201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」을 준용

**I****기금운용 여건**

---

(경제여건) 세계경제의 성장세와 정책성과 등으로 국내경제는  
완만한 회복전망

---

○ 다만, 금융시장의 변동성,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 
강화 필요

---

(수입여건) 자체수입 확대 여지는 제한적

---

○ 사회보장 기여금 등으로 인해 전체 자체수입은 다소 증가할  
것으로 예상되나

○ 사업성 기금은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금융시장 불확실성  
등에 따라 자산 운용수익이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운 상황

---

(지출여건) 국정핵심과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투자, 인구  
고령화 등에 따른 지출소요 증가

---

○ 그간 추진해온 국정과제,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 
가시화하기 위한 지출소요 확대

○ 인구 고령화에 따른 4대 공적연금 등 의무적 지출소요 또한  
지속적으로 증가

○ 이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 조정, 유사사업 통·폐합 등 효율적인  
재정운용을 위한 노력 필요

## II

#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

## 1

### 기금운용 기본방향

#### □ 창의·혁신의 성과를 확산하고 민생안정 지원과 안전사회 구축

- 국정과제,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가시화
- 디지털 콘텐츠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산업화를 위한 창조경제 분야에 투자를 강화
- 서민 주거안정과 취약계층 취업기회 확대 등 민생 지원과 함께 산업재해, 성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
-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대외 원조 확대와 함께 신흥시장 개척

#### □ 3대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기금의 건전성 제고

- 모든 사업을 원점(zero-base)에서 재검토 하는 등 3대 재정개혁\* 추진 (예산편성지침 부분 참조)
  - \* 자원배분의 합리성 제고, 지출 비효율 차단, 재정운용의 신뢰성 강화
- 기금지출 증가는 원칙적으로 자체수입 증가 범위 내로 억제 하고, 지출효율화 노력을 통해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
  -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적용하여 자체수입 확충 노력 강화
  - 기금에 대한 예산출연 및 기금의 차입은 불가피한 소요에 한정
- 여유자금은 투자풀 활용 등을 통한 수익제고 노력과 함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등 통합관리 강화

## 【 창조경제 】

SW 등 창조경제 분야 투자확대와 정보보호 노력을 강화

- SW와 디지털콘텐츠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ICT를 결합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분야에 집중 투자
- 사물인터넷, 클라우드, 홀로그램 등 ICT 신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
- ICT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시장수요 창출·확산 지원
-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침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정보보호 산업을 적극 육성

## 【 민생안정 】

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보급, 자금 지원 등을 지속 수행

- 공공주택 공급의 지속추진과 함께 전세난 완화를 위한 저리 전세자금과 내 집 마련 자금(디딤돌 대출)을 안정적으로 공급
- 노인, 영유아, 장애가구원 등 저소득층 가구에게 동절기 에너지 비용 지원(에너지 바우처)
- 타 지역 출신 대학생의 거주지 확보 및 기숙사비 인하를 위한 행복기숙사 건립 지원

**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**

- 소상공인, 자영업자의 창업과 경영환경 개선 지원 및 재기의 기회를 제공
- 문화·관광 상품이 연계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'찾아가는 전통시장'을 구현

**수급조절 등 농수산물 가격안정 노력 강화**

- 유통단계 축소 및 소비지 유통 활성화, 수급조절 노력 등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
- 농가의 사료 구매부담 완화, 가축질병 예방을 통한 농가피해 최소화
- 농업 생산기반시설은 완공소요 중심으로 투자

**【 고용·복지 】**

**청년·여성·노인 등 취약계층의 취업기회 확대**

- '先취업-後진학' 문화 확산을 통한 노동시장 조기진입 유도
-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,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
- '정년 60세'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, 베이비붐 세대 퇴직 인력에 대해 재취업 및 사회공헌기회 제공 확대
-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 지원, 장애인 근무보조를 위한 근로지원인 확충 등

**현장중심의 직업훈련 체계 구축과 직무능력평가제 등 확산**

-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확대 등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을 통해 훈련과 취업의 연계성 강화
- 직무능력 평가제의 확산(훈련·자격·채용)을 통해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지원
- 스마트워크센터,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유연근무 확산 유도

**다문화 가족의 경제적·사회적 적응 지원**

-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직업교육, 취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
- 결혼 이민자 등의 조기 사회적응을 위해 언어교육과 함께 통·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

**보건의료 지원 강화 및 공공의료 기능 개선**

- 어린이 국가예방 무료접종, 난임부부 체외수정 경비 등을 지원하고 암, 뇌혈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
- 지역실정에 맞는 건강증진 중심으로 보건소 기능개편을 지속 추진하는 등 공공의료 기반 정비

## 【 국민안전 】

###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

- 화학물질 취급 위험사업장 등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제조·건설분야 사고·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기반 구축 강화
-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를 통해 자율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

###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

- 범죄피해 구조금, 심리치료비 및 간병비·치료 부대비용 지원 등 피해자 지속 지원
- 긴급생계비, 이사비·주거마련비용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

### 성폭력·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

- 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, 의료비 지원 등 성폭력 피해자 지속 지원
- 진술조력인 및 피해자국선변호사 배치를 통해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
-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의 체계적인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수행

## 【 문화융성 】

### 생활 속의 문화·체육 향유 기회 확산

-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·보급
- 일상에서 즐기는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생활체육 이용시설 확충

### 고부가가치 관광·스포츠 산업의 신성장 동력화

- 세계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MICE\*·의료·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
  - \* Meeting(회의), Incentive(포상관광), Convention(컨벤션), Exhibition(전시)
- 스포츠 R&D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스포츠 산업의 저변 확대 유도

## 【 외교·통일 】

### 남북간 호혜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통일시대 준비 추진

-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와 남북간 교류·협력 기반 확충
  - 「드레스덴 통일구상」 지원, 남북간 철도복원사업계획 등 통일 준비를 위한 인프라 확충 지원
- 이산가족 교류, 남북문화 교류 등을 활성화하여 민족화합과 동질성 회복

□ 유무상 연계 및 기업진출 기반 마련 등 **ODA** 효과성 제고

- 유·무상 사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해 ODA 효과성 제고
- 우리 기업 진출과 연계하여 개도국의 인프라 확충 및 신흥시장 개척을 동시에 추진
- 우리의 발전경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도국 자립역량 강화
- 개도국 현실에 맞는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 ODA 지원

## **제4편**

# **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**

# I

##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개요

---

### 1

#### 지침목적

- 각 중앙관서의 장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시 준수해야 하는 각종 절차, 점검 항목,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제시

### 2

#### 적용대상

- ①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「국가재정법」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됨
- ② 동 지침은 기금으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·출연받는 기관에 대하여도 준용됨

### 3

#### 요구절차 및 기한

- ① 사전 의견수렴
  - 중앙관서 내외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, 기금운용심의회 등을 통해 각종 이해단체 등의 요구를 조정
  - 전문가·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도 적극 수렴
  - 타 부처 소관 사업과 수혜대상·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 신설시 관계부처와 사전협의 또는 의견청취 후 협의된 사항 제출
- ② 첨부서류 등 제출
  - 기금관리주체는 「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」을 작성하여 2015년 6월 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

-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시 「국가재정법」 제71조에 따른 첨부 서류를 누락 없이 준비하고,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
  - 재정지원의 타당성, 산출내역(단가·수량 등) 등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
  - 2015~2019년까지의 수입전망\*과 지출소요\*\*
    - \* 연도별 자체수입, 정부내부수입, 여유자금회수 전망
    - \*\* 주요 사업별 또는 항목별로 연도별 지출소요

### ③ 준용 규정

- 「201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」 중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과 관련 있는 부분은 모두 준용

## II

## 수입계획 작성지침

### 1

### 수입계획 작성시 유의사항

#### ①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총액계상

- 보조금·출연금의 정산잔액, 고정자산매각대, 부담금 징수수료 등 수입을 철저히 검토하여 모두 수입에 계상
- 지출과 수입이 연계된 경우에도 지출규모를 상계처리 후 순수입액만의 계상은 금지하며, 반드시 총수입액을 계상
  - 적용사례 : 복권사업의 수입금액, 기금수익사업의 수입금액 등
  - 총액계상원칙의 예외 : 용자대행기관을 통한 용자사업
    - \* 대출금리에서 용자대행 수수료율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하고, 대행수수료는 지출계획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음
- 특히 여유자금 회수수입은 당해연도 자체수입과 총지출액과의 차이만큼이 아닌 반드시 전체 회수 금액을 계상

#### ② 기금별 수입특성을 감안하여 수입추계의 정확성 제고

- 거시경제지표, 최근 수개년 수입실적, 제도변경 요인 등 기금별 특이요인을 분석적으로 검토하여 수입 추계
- 수입항목별로 전망치 산출내역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
  - 규모가 크거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수입은 주요 변수를 반영한 산식·추계모형을 개발·제시
  - 기타 산식 적용이 어려운 수입항목의 경우에도 거시경제 지표 전망치 등을 활용하여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

- 출자배당수입이 있는 경우, 민간부문의 배당성향 및 해당 기업체의 경영여건 등을 분석하여 반영

\* 예시 : 최근 3~5년간의 동일업종 배당성향(실적)과 향후 기업체의 수익전망 등을 고려하여 산정

- 그동안 수입실적이 계획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발생한 기금의 경우에는 수입추계방식 개선방안을 제시

### ③ 기금의 재원배분 합리화 방안 강구

- 중장기적으로 부담금 등 자체수입이 과다하게 증가하여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기금은 다음 사항을 고려

- 타 기금·예산사업중 기금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관련 기금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
- 기금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재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 통합관리 강화

- 실질적으로 국가 재정활동에 해당하나 별도로 운영되던 자금을 발굴하여 재정체계 내로 흡수하는 방안 마련

### ④ 법령, 지침 등의 변경으로 수입감소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후 추진

## 2

## 주요 항목별 작성기준

### 1) 이자수입

① 이자수입은 「여유자금(예치금 등)운용 이자수입」 과 「용자이자수입」 으로 구분하여 산출·계상

②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 산출기준

2016년도중 금융상품별 평균잔액(연/분기별/월별) × 기준수익률

○ 미래현금흐름 예측을 통해 장·단기자금간, 일반금융상품과 연기금투자상품 상품간의 적정 자산배분을 고려하여 산출

\* 기준수익률 : 각 기금의 자산운용지침 및 자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투자자산별 기준수익률

③ 용자이자수입 산출기준

2016년도 각 용자자금별 평균잔액 × 해당 자금의 수입이자율(대출이자율 - 용자취급기관 수수료율)

○ 용자평균잔액은 용자잔액규모, 용자집행시기 등 각 기금별 특성을 감안하여 연·분기별·월별 평균잔액 중 선택 가능

④ 기금운용계획에 미포함되어 운용중인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자수입도 포함하여 산출

### 2) 용자원금회수

□ 2015년도말 추정 용자잔액 중 2016년도 정기(반기) 회수금액 이외에 만기도래 전 조기회수 금액도 반영하여 추계

\* 조기회수는 최근 몇 년간 조기회수율(조기회수/전년도 용자잔액)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2016년도 적정 조기회수율을 추정

### 3)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

- ① 일반회계·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요구는 최대한 자제
  - 수익자부담원칙 확대, 기 조성 재원의 우선활용 등을 원칙으로 하고 출연수입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요구
- ② 타 회계·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, 예탁원금 회수, 예탁 이자수입 등 정부내부수입은 회계 및 기금간 거래금액을 반드시 일치시켜 작성
- ③ 차입금은 연도별 지출소요 증가율 및 자체수입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산출하되, 최소규모로 한정
  - 통합재정수지의 건전성 제고 관점에서 2016년도 기금수지를 악화시키는 차입금 규모 증액요구는 지양

### 4) 여유자금 회수

- ① 2015년도말 현재 기금운용계획상 또는 계획 외로 운용하고 있는 전체 여유자금 중 2016년도에 만기가 도래되는 모든 자금을 여유자금회수로 계상
  - 단, 동일한 자금이 단기운용 등으로 인해 연중 1회 이상 반복하여 만기가 도래되는 경우 1회분만 여유자금회수로 계상
    - \* 연중 반복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이 다를 경우, 그 중 큰 금액을 계상
- ② 2014년도 미집행잔액 등 결산상잉여금은 2016년도 수입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고
  - 2015년도에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 2015년도 계획에 반영

### Ⅲ

## 지출계획 작성지침

### 1

### 지출계획 작성시 유의사항

- ① 기금수지 개선방안 적극 강구 등 기금재정의 건전성 제고
  - 원칙적으로 기금수지(총수입-총지출)는 전년과 비교하여 개선되도록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요구
  - 기금수지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, 자체수입 확충방안, 기존사업 구조조정 계획 등 기금수지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출
- ② 신규사업은 사업추진의 필요성·시급성·구체성 및 재원 대책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요구
  - 기금 설치목적에의 부합성, 사업의 타당성 여부, 예산·타기금 사업과의 유사·중복 여부를 사전에 검토
  - 원칙적으로 자체수입 증대 또는 지출한도 내 기존사업의 감축방안을 동시에 제시
  - 보조사업 이외의 사업은 기존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사업 신설을 허용하여 부처별 사업수를 일정수준에서 관리 (one-out, one-in)
- ③ 유사·중복, 집행부진, 성과미흡 사업은 통폐합 또는 축소조정
  - 기금·예산간 또는 기금간 유사·중복 사업은 통폐합 또는 축소하고 예산사업중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이관
  - 보조사업은 소관 부처별로 사업수(세부사업 기준)를 10% 감축하여 요구하고 자체 구조조정 추진(예산편성지침 보조사업 참조)

- 부처별로 자체 '재정개혁 추진계획'을 수립하고 연례적 집행 부진, 성과미흡, 외부지적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

- \*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, 미흡 및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10% 이상 삭감 추진 (예산편성지침 성과평가 대상사업 부분 참조)

#### 4] 공통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한 사업은 필요 절차 준수

-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은 관련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

- \*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회피 목적으로 총사업비를 축소하는 경우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시 불이익 부과

- 건물신축 등 신규 시설사업도 최대한 억제하고 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

- 「정부청사관리규정」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청사건축은 「2016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」에 사전 반영된 경우에 요구

- 청·관사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에너지 사용 절감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검토

- \*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의 적용을 받는 기관(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)의 신축청사는 「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」(산업통상자원부, '12.2.28일 개정)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설계 등 방식을 채택

- 신규 시설·장비 도입시 인력운용 등 총비용 관점에서 검토

- 신규 시설·장비 도입과 관련, 예산편성시 직접비용 외에 인건비, 관리비 등을 포함한 '총비용'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

- ⇒ 인력충원계획 등을 포함한 '총비용산출내역'을 제출

- 10억원 이상 기금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의 경우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행사에 한하여 반영

- 과도한 재정소요를 유발하거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는 국제행사는 최대한 억제
  - 사후평가 결과 당초 행사목표(성과)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향후 유사한 국제행사 신청시 불이익 조치
- 신고보상금(포상금)은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, 기관별 자체적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한 후 예산 요구
-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신고보상금(포상금)은 실제 집행이 가능한 적정소요 반영
- ⑤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성별영향, 지역발전예의 영향·평가 결과 등을 반영
- ⑥ 법령상 규정된 부담금의 설치목적·사용용도에 부합하도록 관련 사업에 적정소요 반영
- ⑦ 기금운영비 관리를 효율화하여 최대한 절감 편성
- 관서운영비, 업무추진비, 여비 등 경상경비는 절감 편성하고 기금조성 목적과 맞지 않는 기금운영비에 대해 엄격히 관리
- ⑧ 계약이 체결된 계속사업은 「총사업비 관리지침」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등 총사업비 조정 후 예산 요구
- \* 보조금·출연금·출자금 등에서 추진하는 계속사업도 이를 준용
- ⑨ 기존 운용 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요구시 기존 펀드의 자금 활용 방안(자펀드 청산결과 및 향후 청산계획 등을 포함)을 우선 검토

## 2

## 주요 항목별 작성기준

### 기금운영비 작성기준

#### 1) 인건비

- ① 인건비 총액은 「전년대비 일정률 증감방식」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, 기관별 특이사항만 별도 검토

$$2016\text{년도 인건비 총액} = 2015\text{년도 인건비 총액} \times (1 + 2016\text{년도 인건비 공통 증감율}) + \text{특이 증감소요}$$

- ② 자연 증가 소요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작성

\* (자연증가 소요 예시) 2015년도 인력증원시 6개월분 반영  
→ 2016년도 요구시에는 12개월분 반영

- 차년도 처우개선 소요는 추후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조정
-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요구할 경우에는 특이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 제출

- ③ 인건비 작성기준 적용범위

- 인건비 작성기준은 기금운영비 이외에 사업비에 계상되어 있는 출연·보조·위탁관리기관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

## 2) 경상운영비

### ① 경상운영비 계상범위

- 기금운용을 위한 기관 운영경비, 기금 자산운용에 소요되는 경비, 기타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적 경상지출 경비는 모두 기금운영비로 계상
- 사업비에 경상적 운영비의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에 사업비에 포함된 경상적 운영비는 경상운영비로 이관추진

### ② 경상운영비 작성방식

$$2016\text{년도 경상운영비} = 2015\text{년도 경상운영비 Base금액} \times (1 + 2016\text{년도 공통 기준율}) + \text{특이 증감소요}$$

-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와 특이소요로 구분하여 편성
  -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
    - 연례적·반복적인 경비로서 '15년도 기금운용계획상의 경상운영비에 반영된 특이소요를 제외한 금액(경상운영비 Base)을 의미
  - 특이소요
    - 사업비규모 증감에 따른 연동경비, 전년도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자연증가소요 등 특정 연도에만 발생하는 경비 등
-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영비 요구시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와 특이소요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
  -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는 추후 공통인상률을 적용할 경비이므로 전년 수준으로 반영

- 특이소요는 연동되는 사업비 증감규모 등 증감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함께 실소요 계상

### ③ 기타 유의사항

- 경상운영비 내에서 각 개별경비의 비목은 예산상의 비목과 일치시켜 작성
- 여유자금 등 자산운용을 위탁할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경상 운영비에 별도 계상

#### ▪ 산출기준

2016년도 위탁자산 평균잔액 × 위탁수수료율

\* 위탁자산규모는 기금별 특성을 감안하여 연·분기별·월별 평균잔액 중 선택 가능

- 다만, 운용사와의 수수료 협상력이 약화되거나 수수료 예측이 불가하여 계상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
- 직원 복지를 위한 학자금 등 대여사업을 융자금 비목(450목)으로 반영하는 것은 지양

## 사업비 작성기준

### 1) 민간 보조사업

① 민간 보조사업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비 반영

- 기금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
- 민간의 '권한과 책임' 하에 자율적인 사업 수행이 바람직한지 또는 유사 단체나 기관에 대한 중복지원은 아닌지 여부
- 사업목적 달성 등으로 지원 필요성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여부
- 관계부처간 협의로 지원 중단하기로 하거나,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된 사업이 아닌지 여부
- 보조금 부정·부적정 지출의 원인별 개선방안 추진
  -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,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부정수급 방지 인프라 확충
  -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, 일몰제 도입 등 보조사업의 선정 심사·평가 강화
  - 민간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·외부회계감사 의무화, 부정수급시 징벌적 과징금, 사업참여 영구 금지(one-strike out) 도입
-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경우, 관련 예산 삭감·폐지

② 민간 보조의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에 한정

-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기관
- 국제협약 또는 국가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한 기관

③ 보조방식 등 사업지원체계를 명확히 수립하여 작성
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기타 개별 법률 등에 보조율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거 법령과 보조율을 명시
  - 보조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2015년도 보조율 적용
  - 정액으로 보조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2015년도 지원기준 적용
- 보조금일몰제 적용(예산안 편성지침 「국고보조 사업」 부분 참조)

④ 출연금을 지원하는 기관에는 별도의 보조금 지원 지양

## 2)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

① 지원기간 및 연차별 지원규모를 사전에 확정된 후 지자체 보조사업 반영

- 현재 국고로 지원 중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은 지방이양 추진
- 원칙적으로 2016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공고·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사업비를 요구
- 다만, 불가피할 경우에는 정부안 확정 이전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일정을 요구서에 첨부
- 「보조금법」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국고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한 경우, 중앙관서의 장은 전년도 사용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출

②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기금 보조금 신청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지자체 보조사업 반영

- 지자체의 신청없이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라 사업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사전 고지
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반영
  - 지자체 중기재정계획에의 반영 여부 및 재정 투·융자 심사 완료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, 전년도 지방비 분담실적 등 확인
  - 계속사업의 경우, 지자체 분담분 미확보시 원칙적으로 '16년 요구 금지
- ④ 보조방식 등 사업지원체계를 명확히 수립하여 작성
  - 구체적인 내용은 민간보조사업의 작성기준을 참조
- ⑤ 유사·영세보조사업은 통폐합하고, 사업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유사 보조사업간 기준보조율을 통일하여 작성

### 3) 보조사업 구조조정

-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자체 구조조정 우선 추진

< 일몰 대상(예시) 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i) 지원 목적이 달성되어 시장기능을 통해 자율적 수행이 가능한 사업</li> <li>ii) 그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초 지원효과가 불투명한 사업</li> <li>iii) 여건변화 등으로 국고지원 필요성이 감소한 사업</li> <li>iv)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</li> <li>v)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등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인 사업</li> <li>vi) 연례적 집행 부진 등 외부지적(국회, 감사원 등)이 있는 사업</li> </ul>

- 소관 국고보조 사업 수는 신규 요구사업을 포함하여 '15년 기금 운용계획 대비 사업수를 10% 감축하여 요구
-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
  - '14년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중 '16년 폐지·단계적 감축·사업 방식 변경 대상 사업

- '15년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중 '16년 폐지·단계적 감축·사업 방식 변경 대상 사업

< 보조사업 평가결과 및 활용방안 >

평가결과		활용방안
폐지	① 즉시 폐지	▪ 해당 보조사업의 예산 미반영 검토
	② 단계적 폐지	▪ 계속사업 진행 등으로 즉각적 폐지는 곤란하나, 사업목적 달성 시점을 명시(일몰기한 설정)
	③ 통폐합	▪ 유사사업 및 관련사업과 통합
유지	④ 단계적 감축	▪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, 여건변화 등으로 지원 적정 규모가 감소한 경우 감액
	⑤ 사업방식 변경	▪ 보조금 지원이 아닌, 기관 직접수행 또는 위탁사업 등으로 운영(사례확인요)
	⑥ 정상 추진	▪ 적정 소요를 지원하되, 사업성과가 우수한 경우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

□ 세출구조조정 노력 강화

- 지원방식 개선을 통해 사업 효율화 추진

- \* (예시) 현행 직접보조 → 인센티브 지원 또는 정액보조 방식
- \* 보조기관·단체를 통해 국고 100%로 지원하는 연구용역비, 행사비 → 연구용역비는 부처의 직접사업비, 행사비는 위탁사업비로 변경

- 시설보급률 등 자치단체 상황을 고려한 국고보조율 조정, 보조율 차등화 및 특별교부세 활용 방안 강구

- 실 집행부진, 성과미흡 보조사업은 구조조정 추진

-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·지자체 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 축소·폐지

- 일몰 도래 사업, 자치단체 고유사업,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사업, 전달기관 운영·유지 성격이 강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 폐지 추진

□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금·운영비 지원은 경영개선 및 자구노력 우선 추진을 전제로 정부지원 여부·방식 등 결정

### 3) 용자사업

- ① 용자사업비는 최근 3년간의 집행실적, 향후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
  - 수요 부진 등으로 연례적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용자사업 규모 축소 또는 폐지
    - \*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,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지원 필요성과 집행률 제고방안을 작성하여 제출
    - \* 집행가능성이 낮은 용자사업의 과다 계상 금지
  - 자체 재원이 아닌 차입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용자사업은 사업규모 확대를 지양
- ② 부처내·부처간 용자사업의 지원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, 용자기간 등 지원조건을 재검토
  - 지원목적·내용·대상 등이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
  - 사업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으나, 용자조건을 달리 적용할 실익이 없는 사업은 용자조건을 동일하게 조정

### 4) 투자조합 출자사업

- ① 신규출자는 재정출자펀드(투자조합)의 투자진도, 투자 수익률, 기금의 출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
  - 재정출자펀드의 설립진도(현 조성액 규모 등)가 계획에 비해 저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체 점검 실시
  - 기결성된 재정출자펀드의 투자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기결성 펀드를 우선 활용하고 신규 출자는 지양

-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적정 출자수익률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신규 출자

- \* 기존 출자조합의 수익률이 기금의 자산운용수익률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신규출자 제한

- 민간자금 조성을 유인할 수 있도록 기금출자의 적정 비율 유지

② 재정출자펀드에 대한 신규출자를 요구함에 있어 아래의 4가지 단계에 따라 재정출자의 적정성 등을 사전 점검

- (자금조성 단계) 목표 조성금액 대비 현 조성액 규모 점검

- “현 조성액 / 목표 조성액”이 50%이하일 경우 각 펀드별로 자체점검 실시

- \* 주요 점검항목 : 목표 조성액 및 자원 마련구조의 적절성, 정부·공공기관 출자계획의 현실성 등

- (자금유치 단계) 민간자금과 공공자금간 매칭비율 확인

- 민간자금비율이 목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정출자 보다는 민간자금 유치에 중점

- \* 민간자금 : 정부(예산·기금) 출자금, 공공기관 출자금, 정부·공공기관과 관련된 출자금(예: 정부보증 출자금) 등을 제외한 순수 민간에서 모집한 자금

- (자금집행 단계) 현 조성액 대비 실제투자액 규모 점검

- “실제 투자액 / 현 조성액”이 당해 펀드 결성 후 1년이 경과 하고도 50%이하인 경우에는 재정출자규모를 재검토

- (투자회수 단계) 투자금액의 회수 여부 확인

- 하위펀드가 청산되어 여유재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출자보다는 자체재원을 적극활용

## 5) 청사확보사업

### ① 신규사업

- 기금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공간 등 청사 확보는 기금 자체재원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함
- 자체청사는 임차·매입·신축 등을 비교하여 중장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채택하되 구체적인 비교표를 제출
- 총사업비(총사업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추정자료), 사업기간 등 연차별 투자계획을 반드시 제시
  - 특히 청사신축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비 → 설계비 → 보상비 → 공사비 順으로 연차별·단계적으로 반영함을 원칙

### ② 계속사업

- 원칙적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반영된 당해연도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음
-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금액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

### ③ 단위면적(m<sup>2</sup>)당 단가 및 면적기준

- 청사 신축시 m<sup>2</sup>당 단가의 경우 유사건물의 건축단가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제출
- 청사확보 면적은 행정자치부의 청사확보기준을 적용

## 6) 수익사업

### ① 신규사업

- 기금의 수익사업은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수익성 분석결과,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영 가능
- 다음에서 서술한 첨부자료를 반드시 제출
  - 총사업비(총사업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추정자료) 및 연차별 투자계획
    - \* 단, 연차별 투자계획은 단계별 편성원칙(타당성조사비 → 설계비 → 보상비 → 공사비)을 준수하여 수립
  -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추진시 기금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
  - 연차별 투자비 및 예상수입 등을 토대로 실시한 내부수익률(IRR) 등 수익성 분석자료

### ② 계속사업

- 원칙적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반영된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음
-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금액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

## 정부내부거래 및 차입금 상환 등 작성기준

### 1) 정부내부거래

① 정부내부거래는 IMF 통합재정 분류기준에 따라 작성

- 대상거래 : 일반회계 · 특별회계 · 기금 · 비금융공기업 부문과의 출원, 용자, 예수, 예탁, 예수원금 · 이자 상환, 예탁원금 · 이자 회수

② 예수금 또는 용자원리금 상환의 경우 상호간 확인을 거쳐 계상금액을 일치시키고 이자계산방식을 통일

- 내부거래 확인원칙

-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거래하는 기금 ⇒ ▪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기준으로 확인
- 특별회계와 거래하는 기금 ⇒ ▪ 당해 특별회계를 기준으로 확인
- 기금간 거래인 경우 ⇒ ▪ 기금 상호간 확인

③ 사업성기금은 기금 고유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금여유자금을 공자기금에 예탁

- 기금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예탁 사유서 별도 제출

### 2) 차입원리금 상환

□ 차입원리금 상환은 상환스케줄에 따른 당해연도 소요를 계상

## 여유자금운용 계상기준

- ① 여유자금은 현금성 자산\* 중 당해연도에 운용되는 자금으로 전체수입에서 사업비, 운영비 등을 차감하여 계상

\* 현금성 자산 : 현금 또는 주식·채권 등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

- ② 여유자금은 자금운용 대상에 따라 세분하여 계상하되, '차기이월' 과목은 사용 금지

## IV 협의 및 보완

---

-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「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주요 협의·보완 사항」에 따라 각 부처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협의·보완할 계획
-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별 지출한도 등을 포함하여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추가 통보할 수 있음
- ③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협의·보완 요구시 각 기금운용주체는 이에 충실히 응하여야 함